「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」핵심 Q&A

2025. 9.

보험개발원

____ 〈목 차〉____

1.	「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」과 관련하여 모집 대상 요양기관은 어느 정도인지 ?
2.	환자(가입자)가 의료기관에 의료비 증명서류 전송을 요청 함에 따라 의료기관 업무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?1
3.	「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」구축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, 참여를 위한 준비(예:내부보고, 신청서류 준비 등 미흡)가 부족한 요양기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? 2
4.	상용 EMR솔루션·청구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및 상용 EMR솔루션·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의 경우,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?2
5.	상용 EMR솔루션·청구 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[서식2]의 요양기관 참여 동의서 및 협조사항 이행확약서(EMR·청구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용) 내 요양기관 동의 서명을 공고 마감기간 내 받기 어려울 경우 ?
6.	「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」구축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금은 증빙서류 등을 제출시 바로 지원되는지 ?3
7.	「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」구축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서버구입·설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내부 사정으로 사업 기간 내 테스트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?4

,	환자의 요청으로 관련 청구서류를 전송한 후 보험사의 추가 서류 요청으로 환자가 다시 요양기관에 방문할 경우에 대한 환자 상담 등의 업무는 요양기관이 떠안아야 하는건지 ? 4
ż	환자 등이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의료기관과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구분할 수 있는 별도의 의료기관 인증제도 등이 있는지 ?
10.	웹/앱 등에 익숙하지 않은 50, 60대 이상의 IT 소외계층을 위한 청구 편의성 제공 방안이 있는지 ?
	의료기관 협조사항 중에 '방화벽 개통 등'이 포함되어 있는데 내부 사정상 불가능한 경우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? 5
	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어떻게 되는지 ?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13.	사업 검수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이 '테스트용 진료 데이터'를 생성 및 제공해야 하는데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?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14.	사업 검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테스트 방법 및 절차는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고 되어 있는데, 언제쯤 세부 내용을 알 수 있는지 ?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15.	사업 이후 참여 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도 동일한지 ?7
16.	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'사업기간 내 발생하는 비용에 한정'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?

- 1. 「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」과 관련하여 모집 대상 요양기관은 어느 정도인지 ?
- □ 신청기관에 대하여 자격요건 적격성 확인 후 선정기관으로 선정할 예정
 - 다만, 사업예산 소진 또는 사업목표 달성 등에 따라서 최종 선정기관수는 제한 가능 (접수시간 기준)
 - 2. 환자(가입자)가 의료기관에 의료비 증명서류 전송을 요청 함에 따라 의료기관 업무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?
- □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은 보험개발원의 플랫폼(웹 또는 앱)에 환자(가입자)가 직접 접속하여 청구하고, 중계시스템에서 해당 증빙서류를 직접 가져오는 방식
 - 따라서, 「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」 구축으로 의료 기관의 업무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며, 오히려 의료기관이 수행하던 서류발급 업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

- 3. 「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」구축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, 참여를 위한 준비(예:내부보고, 신청서류 준비 등 미흡)가 부족한 요양기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?
- □ 금번 사업은 원활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목적으로 신청 서류 및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함에 따라 관련 서류 준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
 - 다만, 참여 의사는 있으나 내부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공고기관에 문의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
 - 4. 상용 EMR솔루션·청구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및 상용 EMR·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의 경우, 구체적 인 신청방법은?
- □ 상용 EMR솔루션·청구 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주관기관이 되어,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는 요양기관들과 함께 참여해야 함
 - 5. 상용 EMR 솔루션·청구 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[서식2]의 요양기관 참여 동의 및 협조사항 이행 확약서(EMR·청구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용) 내 요양기관 동의 서명을 공고 마감기간내 받기 어려울 경우 ?
- □ 공고 마감기한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[서식2]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서를 제출하며, 사업기간 내 [서식2]가 완료되는 경우 제출 가능
 - 또한,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는 참여 요양기관에 대한 서식은사업 진행 중에도 추가 가능

- □ [서식2]의 하나의 페이지에 모든 요양기관의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 각 요양기관이 개별 서명한 동의서 및 이행 확약서에 주관기관의 서명(또는 인) 후 제출 가능
 - 6. 「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」참여 의료 기관에 대한 지원금은 증빙서류 등을 제출시 바로 지원 되는지 ?
- □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금은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제출시 확인 후 지급될 예정
 - 이 의료기관의 내부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선급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기관과 별도로 협의 필요
 - 7. 「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」에 참여한 의료 기관이 서버구입·설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내부 사정으로 사업기간 내 테스트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?
- □ 서버구입, 설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기관에서는 사업 참여 신청시 공고기관에 서버 신청 가능
 - 이러한 경우에는 공고기관에서 일정에 맞추어 일괄 구매및 배포해 드릴 예정
 - 다만, 이는 공고기관이 구매를 대행하는 것이며 해당 서버에대한 소유권 및 유지보수 책임은 참여기관에게 있음

- 8. 환자의 요청으로 관련 청구서류를 전송한 후 보험사의 추가서류 요청으로 환자가 다시 요양기관에 방문할 경우에 환자 상담 등의 업무는 요양기관이 떠안아야 하는건지 ?
- □ 현재 실손 청구 전산화 시스템으로 보험사에 전송될 수 있는 서류 양식은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세부내역서,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으로 한정
 - 진단서 등 그 외 필요한 서류는 부득이하게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, 현행(종이서류 발급)에 비해 요양기관의 업무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님
- □ 다만, 보험금 지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예정
 - 9. 환자 등이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의료기관과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구분할 수 있는 별도의 의료 기관 인증제도 등이 있는지 ?
- □ 환자로 하여금 해당 요양기관이 실손24에 연계된 요양기관임을한눈에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 추진 중
 - ㅇ 시스템 오픈 단계에서 홍보 자료 (포스터, 알림마크) 요청 시 제공
 - ㅇ 네이버 지도에 '실손24' 연계 요양기관 표기

- 10. 웹/앱 등에 익숙하지 않은 50, 60대 이상의 IT 소외계층을 위한 청구 편의성 제공 방안이 있는지 ?
- □ PC 또는 모바일의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청구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실손24 콜센터(☎1811 - 3000)를 운영 중이며 이 외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
 - 11. 의료기관 협조사항 중에 '방화벽 개통 등'이 포함되어 있는데 의료기관의 내부 사정상 불가능한 경우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?
- □ 방화벽 개통 없이는 「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」과 연계 방안이 없으므로 내부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가 필요
 - 12.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어떻게 되는지 ?
- □ 보험업법에 따라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'24.10.25일부터, 의원 및 약국은 '25.10.25일부터 진료비 영수증 등의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야할 의무가 부여되므로, 구축사업 미참여시 해당 의료기관에는 법률위반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

13. 사업 검수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이 '테스트용 진료 데이터' 생성 및 제공해야 하는데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?
☐ '테스트용 진료 데이터'는 환자의 실제 데이터를 의미히 것이 아님
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실제와 유사한 가상의 데이터 다양하게 생성하여 테스트 진행 가능
14. 사업 검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테스트 방법 및 절차를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고 되어 있는데, 언제쯤 세부 내용을 알 수 있는지 ?
□ 참여기관 선정 이후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
15. 사업 이후 참여 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도 동일한지 ?
□ 사업 이후 참여 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은 축소되거나 종 될 수 있음

- 16. 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'사업기간 내 발생하는 비용에 한정' 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?
- □ 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실제 집행 비용 증빙시 지원 예산 한도로 지급함
 - o '사업기간 내 발생하는 비용에 한정'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,
 - 아사업 추진으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이후 발생하는 유지보수비용은 별도로 계약 체결하여 지워 예정